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DB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DB마이티코스피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DB마이티코스피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DB마이티코스피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DB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및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7.10.24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7.1.1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단.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 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 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 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 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 신탁을 전부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 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추가설정, 환매, 종목 편출·입 및 비중조정시 저유동성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 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17.10.24)

DB마이티코스피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펀드코드: AX766)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DB마이티코스피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D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추적대상 지수(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DB자산운용 주식회사(02-787-3700)		
모집[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제한을 두지 않음
효력발생일	2017.11.1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투자신탁 보수(연, %)				
구분	지정참가회사	운용 등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투자신탁	0.04	0.24	0.04	0.32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사용.
※ 보수 지급시기: 매3개월
※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수 또는 법인투자자의 설정청구	**환매 방법**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도 또는 법인투자자의 환매청구
기준가	1.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 2. 공시방법: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 판매회사 · 한국금융 투자협회(www. 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을 추적대상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법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이하 “기초지수”라 한다)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종목 중에서 부도리스크에 노출된 종목을 제외한 종목 모두를 편입하는 완전복제법을 원칙으로 사용

※ 비교지수: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100%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증권 등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따라서 편입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4.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규모(팀운용)
김세헌	이경희	587개 / 17,703억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 가능

5.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투자기간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냄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2016/01/01~2016/12/31	2015/01/01~2015/12/31
투자신탁	2014-12-10	4.60	10.65
비교지수	2014-12-10	0.89	7.25

* 비교지수 :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2]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상품 가입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 지수(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 수료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추적 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주)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6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이 투자신탁 수익률 간의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비용의 최소화, 추적오차를 감안한 포트폴리오 납입자산내역 작성 등의 다양한 보완방안을 실행할 예정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o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부담합니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kr)

[목차]

제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DB마이티코스피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AX76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또는 "ETF"라고 함)(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추적대상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주1)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법인에 한하여 지정참가회사에서 모집 청구(설정단위(1CU)인 30,000좌 단위로 설정 청구 가능)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은 금전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주1) 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의 내용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가. 거래소 상장

-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증권시장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1) 상장 증권시장 : 한국거래소

(2) 상장일 :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장 예정

(3) 거래방법 및 거래가격 :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래에 따른 절

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나. 상장요건

(1) 규모 요건 : 상장신청일 현재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 수익증권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2)유동성 요건 :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이며,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자가 1사 이상일 것

(3) 자산의 구성요건

①지정참가회사가 투자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가 납부한 납부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납부가 가능한 경우

- 증권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의 100분의 95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하며 지수 구성종목 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251조에 따라 매일 공고하는 자산구성내역에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이상 편입할 것

②위의 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의 ①이외의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방식으로 설정 및 발행할 것

다. 상장폐지

(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 116조에 의한 상장폐지 요건

① 투자신탁 수익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라 함)가 0.9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함.

②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③ 규정에 따라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 회원이 없는 경우

④ 이 투자신탁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⑤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규정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함.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전액 잠식, 회생절차 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상 등의 경우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⑥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⑦ 이 투자신탁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⑧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⑩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해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해지(해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집합투자규약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합니다.

※ 상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일괄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이 기준의 변동에 따라 이 일괄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파악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1)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적용하게 되며,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DB마이티코스피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AX76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시행일	주요 내용
2014.12.10	최초 설정
2015.1.30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반영 등)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및 집합투자규약 변경 반영
2015.3.11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환매조건부매도 신설)
2015.6.3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정재욱 -〉 이경호
2016.1.8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및 법개정 반영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반영)
2016.7.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1등급-〉2등급)
2016.7.30	설정청구 및 환매청구의 기준시점 변경(15시30분-〉16시)
2017.1.13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경호-〉김세헌)
2017.6.1	- 책임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책임 : 이경희 -〉 김세헌 부책임 : 김세헌 -〉 이경희
2017.11.1	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에 따른 펀드명, 홈페이지주소 변경 · 동부자산운용 -〉 DB자산운용 · 동부마이티코스피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DB마이티코스피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www.dongbuam.co.kr -〉www.db-asset.co.kr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DB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3층(대표전화:02-787-37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7.5.26 기준)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table>
<tr><td rowspan="2">김세헌</td><td rowspan="2">1983</td><td rowspan="2">책임운용전문인력</td><td>587개</td><td>17,703억</td><td>- DB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 신영증권</td></tr>
<tr><td colspan="2">성과부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td><td rowspan="2">- DB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본부장(현직)
- 서울대 대학원 수학과 CFA
- 주식 및 파생상품운용
- 동원증권, ㈜Fonet 연구개발실</td></tr>
<tr><td>이경희</td><td>1968</td><td>부책임운용전문인력</td><td>-</td><td>-</td></tr>
</table>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인덱스운용팀의 팀운용입니다.
- 책임운용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현황 :

이경희	**2014.12.10~2017.5.31**
김세헌	**2017.6.1~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상장지수투자신탁(ETF) 투자 과정]

ETF는 설정(환매)과 매매라는 두 개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설정 및 환매 기능을 담당하는 발행시장과 이를 상장시킨 후 매매를 담당하는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출처 : www.krx.co.kr)

-발행시장이란 ETF가 설정 및 환매가 되는 곳을 말하며, 주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정참가회사(AP: Authorized Participant)로 지정된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가 창구역할을 담당합니다.

- 유통시장은 투자자의 성격과 상관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주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매매의 방식이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때, 시장 조성을 위해 유동성공급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이를 LP(Liquidity Provider)라 합니다.

- ETF의 설정 및 환매에는 CU(Creation Unit: 설정·환매 단위)라는 독특한 요소가 있습니다. 설정을 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는 일반적으로 CU에 해당하는 주식현물바스켓(주식형 ETF의 경우)을 집합투자업자에 납입해야 하며, 환매를 할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CU에 해당하는 주식 현물을 받습니다.

※ ETF 의 시장참가자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집합투자업자	ETF 운용 주체 지수추적을 위한 펀드자산의 설계 및 구성종목 교체
지정참가회사(AP)	ETF 의 설정 및 환매신청 창구 역할 주식바스켓(CU) 구성 의무 ETF 와 현물주식 시장간의 차익거래 수행
유동성공급자(LP)	AP 역할 동시 수행 시장에서 호가제공의무 이행 등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역할 수행(집합투자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 체결기관에 한함)

신탁업자	ETF 자산의 보관 및 관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업자를 대신하여 ETF 사무처리 업무 수행(NAV 계산, ETF 설정, 환매 정산금액의 산출)
투자자	ETF 매매(개인 및 법인투자자) ETF 설정 및 환매(법인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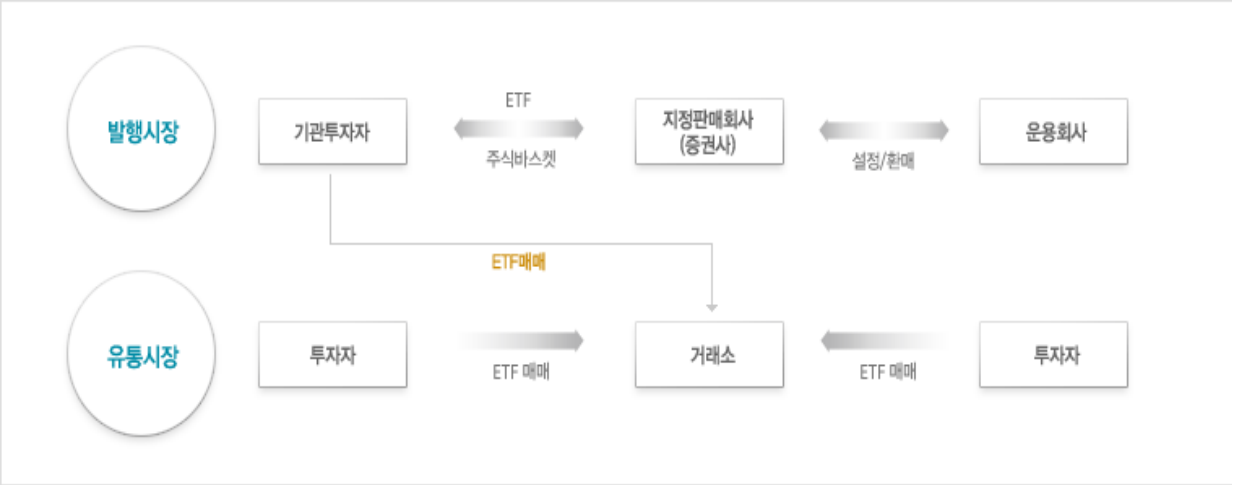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를 추적대상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것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②	주식관련 장내파생 상품	매매에 따른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③	증권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④	증권차입	20% 이하	①에 의한 증권의 차입
⑤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⑥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⑦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종목구성 제한	기초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
추적대상 제한	법 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주식 외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동일종목투자의 한도,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개요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법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이하 “기초지수”라 한다)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 기초지수 :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 개요 : 한국거래소가 개발 및 산출한 지수로서 KOSPI구성종목 중에서 심사기준을 충족한 종목 중 배당수익률이 높은 50종목으로 구성. 2014년 10월 27일부터 발표하며, 2009년 7월 1일을 1,000pt로 하여 소급지수를 함께 발표함
- 심사기준
  - ㅇ 시장규모 : 시가총액 상위 80% 이내
  - ㅇ 유동성 : 거래대금 상위 80% 이내
  - ㅇ 배당실적 : 최근 3사업연도 연속 배당
  - ㅇ 배당성향 : 최근 3사업연도 평균 배당성향 90% 미만
  - ㅇ 당기순이익 : 최근 3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이익 실현
- 지수산정방법 등
  - ㅇ 산출방식 : 배당수익률 가중방식
  - ㅇ 정기변경 : 연 1회(6월 선물옵션 만기일 익일)
  - ㅇ 단일종목 편입 비중 : 3%로 제한(매년 6월, 12월 정기 조정)
  - ㅇ 특별변경 :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피흡수합병 등 발생시 심사기준 충족 종목 중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교체

주) 해당 지수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포트폴리오 구성

▪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종목 중에서 부도리스크에 노출된 종목을 제외한 종목 모두를 편입하는 완전복제법을 원칙으로 사용

▪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의 구성종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추적대상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사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음.

(3) 포트폴리오 조정

추적오차의 최소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중을 조정.

-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구성종목 정기 또는 수시 교체 시
- 구성종목의 유상증자 및 CB전환 등 시가비중 변동 시
- 구성종목의 부도발생 등에 따른 종목 교체 사유 발생 시
- 구성종목의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 기타 이상과 같은 사유들에 준하는 중요한 사유 발생시

***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집합투자기구가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이 투자신탁 수익률 간의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비용의 최소화, 추적오차를 감안한 포트폴리오 납입자산내역 작성 등의 다양한 보완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나, 불가피하게 최소한

의 추적오차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 및 때로는 추적오차의 정도가 상장수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제반 비용(매매수수료, 지수사용료, 상장수수료 등)은 순자산가치를 감소시켜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2)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현금배당은 순자산가치를 증가시켜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3)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교체나 비율변경 등은 신탁재산내역을 조정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탁재산내 구성종목 중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기초지수의 상한가중치에 따른 종목당 최대 편입비 초과분에 대한 최적화(Optimization)과정에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100%**입니다. 이는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를 추적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이 투자신탁의 속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 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은 DB자산운용 홈페이지(www.db-asset.co.kr)에서 확인가능)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증권 등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따라서 편입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추적오차 (Tracking Error)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 지수(**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 수료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추적 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설정, 환매, 종목 편출·입 및 비중조정시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금성 제약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상장된 이후 유동성공급자가 시장거래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나 호가 공백이나, 거래부진 등의 사유에 따른 실시간 매매의 제약 등으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자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거래소에서의 매매를 통한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투자자금 회수곤란 위험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 및 수량만큼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변경 및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추적하는 기초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환매에 따른 위험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격괴리 위험	집합투자증권을 상장시킨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좌당 기준가격(NAV)과는 통상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양이 적거나, 집합투자기구의 환매가 장기간 제한되어 있는 경우,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의 유동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제도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기타 위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거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6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에 해당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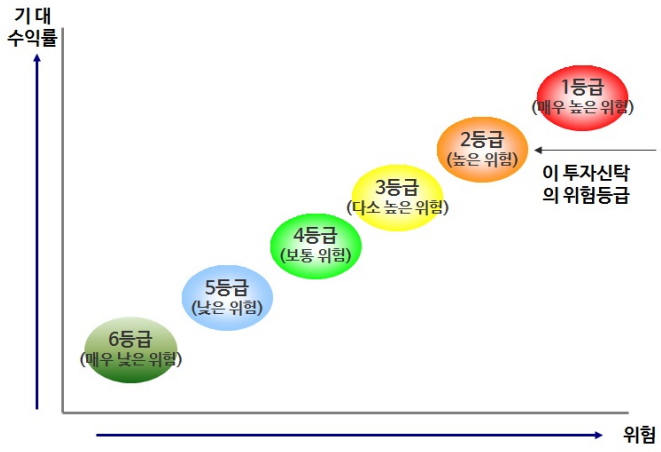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라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가 개편(5단계->6단계)되어 아래의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이 투자신탁은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2등급(높은 위험)**으로 위험등급이 2016.7.2 변경되었습니다.

등급	상 세 설 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부동산, 특별자산,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투기등급CP(B+등급이하),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CP(A3등급)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설정이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결산일 이전 3년간 집합투자기구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단, 수익률의 표준편차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특수집합투자기구(ELF, 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15%초과 25%이하	10%초과 15%이하	5%초과 10%이하	0.5%초과 5%이하	0.5%이하

5.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며,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략상 헤지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지수 추종을 운용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추종지수의 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투자자산의 신용등급, 담보수준, 신용보강 여부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9.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하여 분류합니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위험등급은 당사에서 예시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① 증권시장을 통한 수익증권 매입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는 증권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 또는 시장가격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에 따른 자금지급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매수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수대금 지급 및 수익증권 수도)와 동일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②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입 (투자신탁의 설정 청구)

-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설정합니다.
- 설정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CU: Creation Unit)인 30,000좌 단위로 받습니다.
- 설정에 따른 수익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 수익증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하며,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은 현금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2) 설정단위

설정단위(CU)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ETF(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을 설정신청하거나 수익자가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신청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30,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30,000좌 또는 그 정배수(30,000좌, 60,000좌 등)로만 설정을 청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 및 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하여 공시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 수익증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은 현금에 의한청약만 가능합니다.

(3) 정산금액 (Balancing Amount)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산금액 산출: 설정청구일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청구일 종가 기준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신탁 재산의 운용이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 정산일: 투자자는 당해 정산금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
- 정산금액 발생 이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부자산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설정청구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정산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정산금액 최소화 방안

위와 같은 정산금액의 발생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동 정산금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 보유 주식에서 발생할 금전배당 등을 그 전일자 포트폴리오납부자산 작성시 반영
- 익일의 발생할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 내역을 그 전일자의 포트폴리오 납부자산 작성시 반영 등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동 정산 금액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 투자신탁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신규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부금 등을 포트폴리오납입자산 내역과 동일한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설정청구의 효력 등

- 이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시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설정 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①항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 등을 납입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 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금 등의 내역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함)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②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함)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금전"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금전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대납금전의 산출 :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금전으로 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2) 대납금전의 정산 : 대납금전의 비율이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대납금전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금전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 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⑤투자자가 ②항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는 등 변경(이하 "납부금등의 매매"라 함)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⑥지정참가회사가 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 계좌 또는 법 규정 제7-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⑦ ⑤항 및 ⑥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함)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⑧ ⑤항 내지 ⑦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⑨지정참가회사가 ⑧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금전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금전화한 후 지체 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금전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2) 지정참가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제1호의 투자자의 납부금등을 매매한 경우

⑩ ⑤항 내지 ⑦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 ①항내지 ⑩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⑫ ①항 내지 ⑪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함)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⑬ ⑫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5) 투자신탁의 설정절차

①설정청구일 직전영업일(T-1일)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 개시 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②설정청구일 (T일)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하기 위한 자산(납부금등)을 입고(입고하기로 사전 약정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 청구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입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 만일, 동일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설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 포트폴리오납입자산과 동일한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금등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판단(가격, 시기, 수량 등)은 지정참가회사에 위임을 하게 되고, 투자자는 동 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설정 청구분을 취합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만든 예탁시스템에 입력하고, 동 입력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③설정청구일 익영업일 (T+1일)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설정 청구일에 청구된 설정 청구분을 기초로 익영업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하고, 이를 설정 청구한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익영업일(T+2)까지 정산 및 결제하게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확정된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추가 상장신청을 합니다.

④설정일 (T+2일)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수익증권의 일괄예탁을 의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분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설정 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입고하게 되고, 투자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수익증권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수익증권 입고시간을 T+2일 한국거래소의 영업개시시점에 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는 수익증권 입고 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 설정절차]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정산금액의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청구	인수도명세확정 및 투자자통보	신탁업자로 납부금등 이체(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이체에 의한 이체)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통보(거래소등)	설정내역 확인 및 승인	거래소에 상장신청	수익증권발행(한국예탁결제원 일괄예탁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한국예탁결제원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확정된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 등의 납입확인

나. 환매

(1) 환매 방법

① 증권시장을 통한 수익증권 매도

-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을 통해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매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에서 1좌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②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도 (투자신탁의 환매 청구)

-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해지를 합니다.
- 해지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30,000좌 단위로 받습니다.
- 해지에 따른 수익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2) 해지에 관한 사항

①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 취소 · 업무정지 그 밖에 이 투자신탁이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청구의 효력 등

- 이 투자신탁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시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투자신탁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이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①항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수익자는 ①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⑤ ②항 내지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②항 내지 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⑦ ②항 내지 ⑥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함)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

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⑧ ⑦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⑨ ⑦항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⑩ ⑦항 내지 ⑨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⑪ ①항 내지 ⑩항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함)로 인하여 ⑦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⑦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⑫ ⑪항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⑬ ①항 내지 ⑫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함)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5) 1)호 내지 4)호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⑭ ⑬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3) 투자신탁의 환매 절차

①환매청구일 직전영업일 (T-1일)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 개시 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②환매청구일 (T일)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수익자계좌에 수익증권의 입고(환매청구일에 수익증권을 매수 한 경우를 포함)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환매청구분을 취합하여 한국예탁결제원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합니다.

③환매청구일 익영업일 (T+1일)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익영업일 (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확정된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변경 상장신청을 합니다.

④환매일 (T+2일)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로 자산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환매청구한 수익자의 계좌로 자산을 입고하게 되고, 수익자는

그 즉시 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등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자별 환매절차]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청구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	인수도명세확정 및 투자자통보	투자자계좌에서 수익증권인출 및 자산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거래소등)	환매내역 확인	거래소에 변경상장신청	투자신탁 일부해지
한국예탁결제원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자산이체 및 이체내역 확인

(5) 설정 및 환매시 자산의 이체방법

①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및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입ㆍ출고에 의한 설정ㆍ해지는 불가합니다. .

②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한국예탁결제원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 필요시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함)로부터 3영업일간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

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채용 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에 수익증권 환매 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지 않거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 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 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고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 · 한국거래소(www.krx.co.kr)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수익자가 기준가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기준가격을 요청하거나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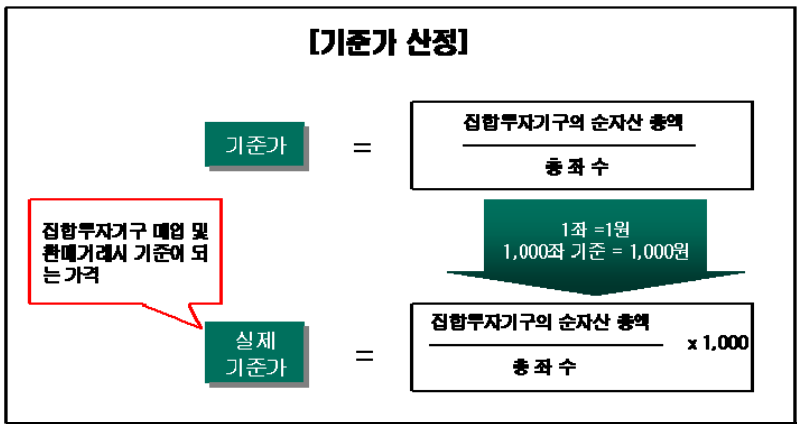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환매수수료(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기준징수)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비고(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연 0.19%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다만, 최초 보수계산 기간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최초설정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까지로 하며 이후의 보수 계산 기간은 그 익일부터 매3개월간
지정참가회사	연 0.04%	
신탁업자	연 0.02%	
일반사무관리	연 0.03%	
기타 비용[주1)]	연 0.04%	사유발생시
총 보수·비용 비율TER[2)]	연 0.32%	-
증권거래비용[주3)]	연 0.03%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2016.1.1~2016.12.31)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 예시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해외거래예탁 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16.1.1~2016.12.31)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지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투자기간	1 년	3 년	5 년	10 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단위: 1,000 원)	32,350	101,985	178,755	406,903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집합투자규약 제34조에 따라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과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의한 이익금을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합니다.

- 지급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단,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 대상 수익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 분배금: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합니다.

③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상기 ① 내지 ③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 이 투자신탁은 일반 투자신탁과 달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시 당해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지 아니합니다. 대신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현금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 등의 배당수익을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으로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시기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운용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예외의 경우

-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유현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3) 상환금등의 지급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현금화하여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기한 : 신탁계약해지 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
- 지급 순자산가치 : 상환금을 지급하는 직전일의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
- 자산의 형태 : 당해 잔존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
- 대상 수익자 : 신탁계약 해지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 상환금 지급처 : 수익자의 위탁매매계좌(신탁계약해지 기준일에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보유 하고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가 개설되어 있는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또는 증권회사에서 상환금을 지급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①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집합투자규약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등이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법인의 결산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이 회계기간 말일(2016.12.31) 기준으로 300억원 이하인 경우로 회계감사의 적용이 면제됩니다.

가. 요약재무정보(단위 : 원)

항 목	제 3 기	제 2 기	제 1 기
	2016.12.31	2015.12.31	2014.12.31
운용자산	27,224,655,276	21,884,784,835	19,433,889,763
유가증권	27,123,452,755	21,810,702,895	19,067,442,220
현금 및 예치금	101,202,521	74,081,940	366,447,543
기타자산	955,472,744	658,765,541	539,680,845
자산총계	28,180,128,020	22,543,550,376	19,973,570,608
운용부채	0	200,050,958	0
기타부채	20,470,428	17,853,204	4,354,270
부채총계	20,470,428	217,904,162	4,354,270
원본	25,958,491,500	20,701,075,500	20,043,898,500
이익조정금	2,201,246,092	1,624,570,714	-74,682,162
자본총계	28,159,737,592	22,325,646,214	19,969,216,338
운용수익	1,410,241,696	1,755,440,209	-80,506,659
이자수익	2,071,649	4,373,201	445,390
배당수익	1,038,379,081	707,962,301	536,713,990
매매/평가차익(손)	366,010,762	1,038,918,689	-617,753,985
기타수익	3,780,204	4,186,018	87,946
운용비용	84,782,836	568,952,049	4,282,258
관련회사보수	72,264,058	67,605,647	3,368,019
매매수수료	932,203	1,290,744	104,384
기타비용	11,586,575	500,055,658	809,855
당기순이익	1,325,458,860	1,186,488,160	-84,788,917
매매회전율	54	83	16

나. 대차대조표(단위 : 원)

항 목	제 3 기	제 2 기	제 1 기
	2016.12.31	2015.12.31	2014.12.31
운용자산	27,224,655,276	21,884,784,835	19,433,889,763
현금및예치금	101,202,521	74,081,940	366,447,543
현금및현금성자산	101,202,521	74,081,940	366,447,543
유가증권	27,123,452,755	21,810,702,895	19,067,442,220
지분증권	27,123,452,755	21,810,702,895	19,067,442,220
기타자산	955,472,744	658,765,541	539,680,845
미수이자	7,761	4,801	59,727
미수배당금	955,306,236	648,464,775	536,713,990
선급비용	0	9,398,908	2,819,182
기타미수입금	158,747	897,057	87,946
자 산 총 계	28,180,128,020	22,543,550,376	19,973,570,608
운용부채	0	200,050,958	0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200,050,958	0
기타부채	20,470,428	17,853,204	4,354,270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666,130
미지급운용수수료	13,094,136	11,752,850	2,285,458
미지급판매수수료	2,756,624	2,474,250	481,142
미지급수탁수수료	1,378,290	1,237,104	240,566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2,067,460	1,855,675	360,853
수수료미지급금	1,171,628	533,325	320,121
기타미지급금	2,290	0	0
부 채 총 계	20,470,428	217,904,162	4,354,270
원 본	25,958,491,500	20,701,075,500	20,043,898,500
이익잉여금	2,201,246,092	1,624,570,714	-74,682,162
자 본 총 계	28,159,737,592	22,325,646,214	19,969,216,338
부채 및 자본 총계	28,180,208,020	22,543,550,376	19,973,570,608
총좌수	2,370,000	1,890,000	1,830,000
기준가격	11,882	11,813	10,912

다. 손익계산서(단위 : 원)

항 목	제 3 기	제 2 기	제 1 기
	2016.01.01 - 2016.12.31	2015.01.01 - 2015.12.31	2014.12.10 - 2014.12.31
운 용 수 익(또는 운 용 손 실)	1,410,241,696	1,755,440,209	-80,506,659
투자수익	1,044,230,934	716,521,512	537,247,326
이자수익	2,071,649	4,373,201	445,390
배당금수익	1,038,379,081	707,962,301	536,713,990
수수료수익	3,780,204	4,186,010	87,946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062,488,515	2,485,784,452	22,218,410
지분증권매매차익	978,304,515	2,485,784,452	22,218,410
파생상품매매차익	84,184,000	0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696,477,753	1,446,865,763	639,972,395
지분증권매매차손	378,012,292	827,163,655	58,347,996
파생상품매매차손	48,131,740	0	0
지분증권평가차손	270,333,721	619,702,108	581,624,399
기타운용수익	0	8	0
운 용 비 용	84,782,836	568,952,049	4,282,258
운용수수료	49,036,637	45,875,562	2,285,458
판매수수료	10,323,360	9,657,866	481,142
수탁수수료	5,161,589	4,828,850	240,566
사무수탁수수료	7,742,472	7,243,369	360,853
매매수수료	932,203	1,290,744	104,384
이자비용	646,027	1,222,158	0
기타운용비용	10,940,548	498,833,500	809,855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325,458,860	1,186,488,160	-84,788,917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602,571	578,326	-48,43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4/12/10~2014/12/31	1	13,474	2	23,297	0	3,245	2	19,969
2015/01/01~2015/12/31	2	19,969	1	10,239	1	9,069	2	22,326
2016/01/01~2016/12/31	2	22,326	1	8,706	0	3,146	2	28,160

*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전자공시 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 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교지수는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100%**로서, 운용 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서 해당기간 동안 평균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설정일이후
		2016/01/01~2016/12/31	2015/01/01~2016/12/31	(%)
투자신탁	2014-12-10	4.59	7.57	7.15
비교지수	2014-12-10	0.89	4.02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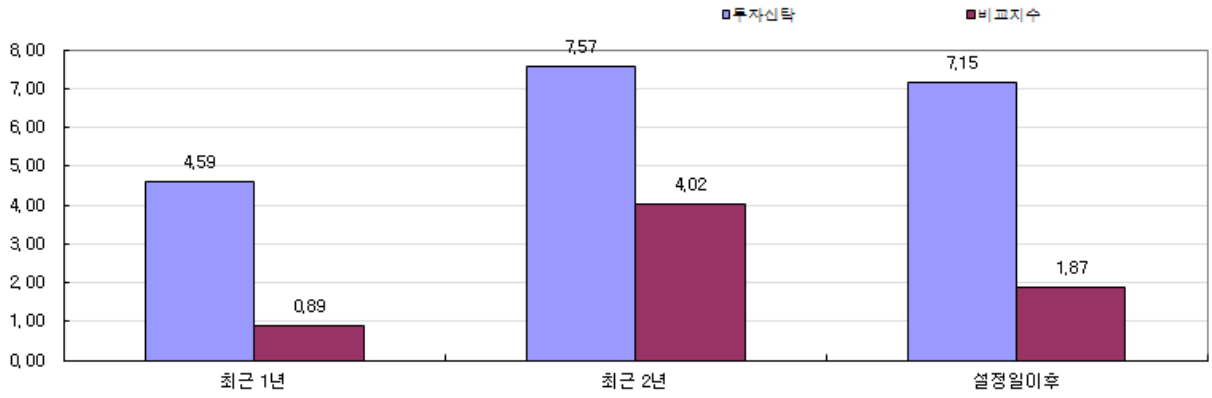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 해당되는 각 1년 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2016/01/01~2016/12/31	2015/01/01~2015/12/31
투자신탁	2014-12-10	4.60	10.65
비교지수	2014-12-10	0.89	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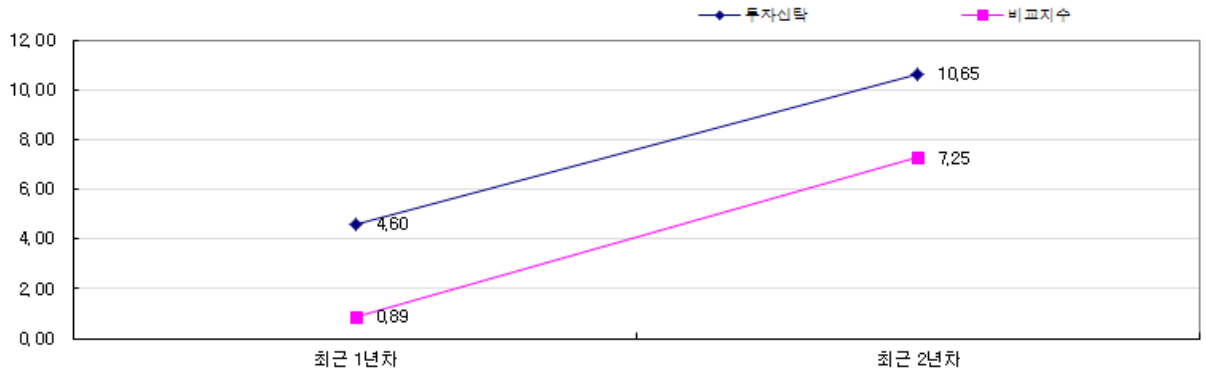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2016.12.31 기준)(단위: 백만)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대한민국	27,123	0	0	0	0	0	101	956	28,180
	(96.25)	(0.00)	(0.00)	(0.00)	(0.00)	(0.00)	(0.36)	(3.39)	(100.00)
자산합계	27,123	0	0	0	0	0	101	956	28,180
	(96.25)	(0.00)	(0.00)	(0.00)	(0.00)	(0.00)	(0.36)	(3.39)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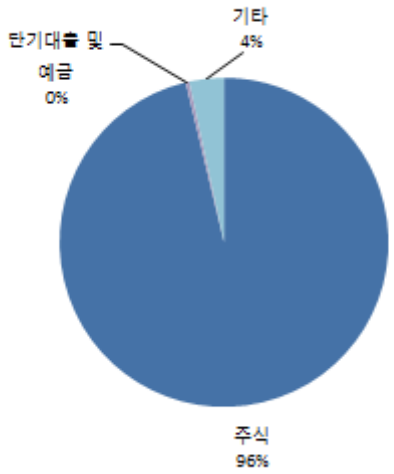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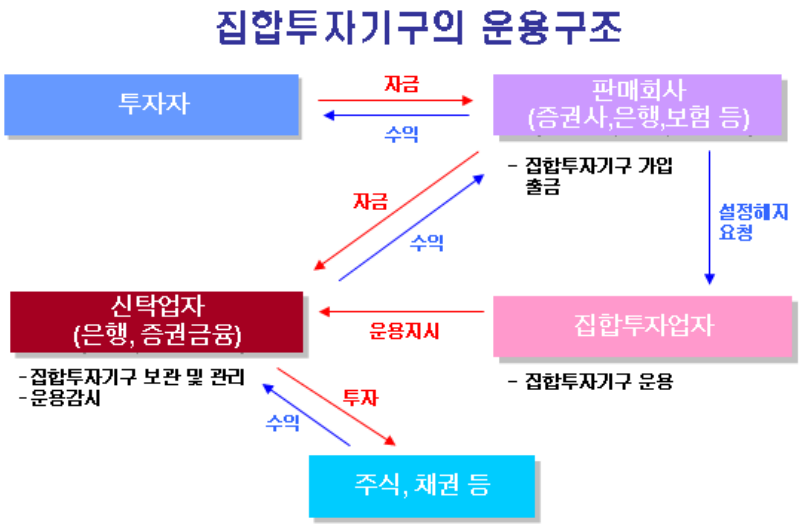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DB자산운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02-787-3700)	www.db-asset.co.kr

나. 주요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의 위탁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 29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

과 목	20 기 (2015.12.31)	19 기 (2014.12.31)
자 산 총 계	44,660	41,064
Ⅰ. 현금 및 예치금	36,641	32,280
II. 매도가능금융자산	417	417
III. 대출채권	263	378
IV. 유 형 자 산	105	117
Ⅴ. 기타자산	7,234	7,871
부 채 총 계	2,115	829
Ⅰ. 기타부채	2,115	829
자 본 총 계	42,545	40,235
Ⅰ. 자 본 금	30,000	30,000
Ⅱ.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Ⅲ. 이 익 잉 여 금	12,545	10,23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4,660	41,064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

과 목	20 기 (2015.12.31)	19 기 (2014.12.31)
Ⅰ. 영 업 수 익	19,127	14,064

Ⅱ. 영 업 비 용	12,357	12,191
Ⅲ. 영 업 이 익	6,769	1,873
Ⅳ. 영 업 외 수 익	0	0
Ⅴ. 영 업 외 비 용	1798	6
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4,972	1,868
Ⅶ.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1461	467
Ⅷ. 당 기 순 이 익	3,510	1,401

라. 운용자산규모(2017. 1.10 기준 /억)

구분	주식	혼합	채권	MMF	파생	재간접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합계
수탁고	7,102	3,165	24,732	26,723	18,345	417	8,612	2,799	327	92,22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신탁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www.kbstar.com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의 무

•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5.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사무관리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한국예탁결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T.02-3774-3000)	www.ksd.or.kr

(2)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8 삼환빌딩 4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4층

(2) 주요 업무

채권 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3) 의무와 책임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②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 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 전 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 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 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 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 223 조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법 제193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 4 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 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②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③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④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⑤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지)
⑥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경과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③ 및 ④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사유에 따라 상장폐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 예정일로부터 1 월 이전에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4)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

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 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 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 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7)집합투자업자의 변경

8)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9)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 87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 제 7 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②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공 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높아서는 아니 된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상장지수투자신탁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